

이용약관 개정 및 단기임대차계약 환불규정 신설 고시

주식회사 미스터멘션은 단기임대 중개 서비스 제공에 따라 「미스터멘션 이용약관」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 「단기임대차계약 환불규정」을 아래와 같이 신설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미스터멘션 이용약관」 제3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1. 개정 이유

단기임대 중개 서비스 도입에 따라 단기임대와 관련한 용어를 정의하고, 임대인(호스트)과 임차인(게스트) 사이의 이용 절차, 임대료·보증금·공과금 및 정산, 준수사항을 규정하며, 숙박업 호스트의 영업허가증 및 단기임대 임대인의 사업자등록증 제출 의무와 법령 위반·숙박업 유사 영업행위 금지를 명시하고, 단기임대차계약의 취소·환불 기준(위약금, 중도퇴실, 미입주, 호스트 귀책 처리)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2. 개정 내용 (요지)

가. 이용약관 개정 (신설 23건, 개정 13건, 삭제 0건)

- 제2조(용어의 정의): 단기임대, 임대인, 임차인, 임대물, 임대 신청, 임대차계약, 임대료(임차료), 입주·퇴거의 정의 신설(제13호~제20호) 및 기존 정의에 단기임대 적용 문구 추가
- 제7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단기임대 중개 및 임대물 정보 제공 서비스 추가(제4항 신설)
- 제21조 제8항 제8호 및 [별표 1] 신설: 숙박업 호스트의 업종별 영업허가증(관광사업등록증, 영업신고증, 농어촌민박사업자신고필증) 의무 제출
- 제7장 단기임대에 관한 특칙 신설(제27조~제31조): 적용 범위 및 용어의 대응, 임대 신청 및 임대차계약 체결 절차, 임대료·보증금·공과금 및 취소·환불, 임차인 준수사항, 임대인 준수사항
- 제29조 제6항·제31조 제9호: 임차인 퇴거 확인 후 3~7일 이내 공과금 정산 및 보증금 잔액 반환
- 제29조 제7항 신설: 임대인 귀책사유로 중도 퇴거 또는 환불이 발생한 경우 임대인 수수료 및 임차인 서비스 이용료를 임대인 정산금에서 제외하고 정산
- 제31조 제7호·제8호 신설: 단기임대 임대인의 사업자등록증 의무 제출,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계 법령 위반 및 숙박업과 유사한 영업행위 금지(위반 시 판매 중단 가능)
- 제5조, 제8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24조: 단기임대 적용을 위한 연결 문구 추가 및 항·호 신설, 부칙 제2조 신설

나. 단기임대차계약 환불규정 신설: 입주 전 취소 위약금, 입주 후 중도퇴실, 미입주 처리, 호스트 귀책 시 처리 기준 (별첨 2 참고)

3. 시행일 및 적용례

- 이용약관 개정: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합니다.
- 단기임대차계약 환불규정 신설: 2026년 11월 11일 00시 이후 예약·결제 완료된 단기임대차계약부터 적용하며, 시행일 이전 예약은 예약 당시의 환불 규정을 따릅니다.

4. 경과조치

개정 약관은 시행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에 적용되며, 시행일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는 개정 전 약관이 적용됩니다. (이용약관 제3조 제4항) 기존 호스트의 영업허가증·사업자등록증 제출 기한은 [제출 기한을 입력해 주세요]입니다.

5. 이용자 안내

이 고시의 게시일 이후 시행일 전까지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언제든지 회원계약을 해지(탈퇴)할 수 있으며, 시행일 이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이용약관 제3조 제5항)

6. 기타

별첨 1. 이용약관 신규조문 대비표 / 별첨 2. 단기임대차계약 환불규정 신설 신규조문 대비표

2026년 10월 12일

주식회사 미스터멘션

별첨 1. 이용약관 신규조문 대비표

※ 개정안 열의 붉은색 글씨는 신설·추가된 부분이며, 현행 열의 <신설>은 현행 약관에 없는 조문임을 뜻합니다. 삭제되는 조문은 없습니다.

구분 / 조문	현행	개정안
개정 제2조 제2호 (용어의 정의)	2. “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숙박중개 등 일체의 용역을 의미하며, 회사가 공개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이용하여 제 3자가 개발 또는 구축한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용역을 포함합니다.	2. “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숙박중개 및 단기임대 중개 등 일체의 용역을 의미하며, 회사가 공개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이용하여 제 3자가 개발 또는 구축한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용역을 포함합니다.
개정 제2조 제3호 (용어의 정의)	3. “이용자”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스트 또는 호스트를 말합니다.	3. “이용자”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스트 또는 호스트(단기임대의 경우 임차인 또는 임대인을 포함합니다)를 말합니다.
개정 제2조 제4호 (용어의 정의)	4.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따라 “회사”와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스트 또는 호스트를 말합니다.	4.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따라 “회사”와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스트 또는 호스트(단기임대의 경우 임차인 또는 임대인을 포함합니다)를 말합니다.
개정 제2조 제9호 (용어의 정의)	9. “보증금”이란 공과금 차감 또는 건물이나 보관된 물품에 관한 손해배상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받는 금액을 뜻 한다.	9. “보증금”이란 공과금 차감 또는 건물이나 보관된 물품에 관한 손해배상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받는 금액을 뜻 한다. 단기임대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보증금을 포함한다.
개정 제2조 제10호 (용어의 정의)	10. “공과금”이란 게스트가 입실 기간 동안 사용한 냉/난방, 전기, 가스, 수도시설 사용 제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뜻 한다.	10. “공과금”이란 게스트(단기임대의 경우 임차인)가 입실(단기임대의 경우 입주) 기간 동안 사용한 냉/난방, 전기, 가스, 수도시설 사용 제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뜻 한다.
개정 제2조 제12호 (용어의 정의)	12. “단박”이란 5박 이하를, “중박”은 6박 이상 부터 28박 까지, “장박”은 29박 이상을 뜻 한다.	12. “단박”이란 5박 이하를, “중박”은 6박 이상 부터 28박 까지, “장박”은 29박 이상을 뜻 한다. 단기임대의 경우 “박”은 임대 기간의 일수를 산정하는 단위로만 사용하며, 숙박업에 따른 숙박 서비스의 제공을 의미하지 않는다.
신설 제2조 제13호 (용어의 정의)	<신설>	13. “단기임대”라 함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물을 일정 기간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그 대가로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임대차를 말하며, 객실 청소·비품 보충 등 숙박업에서 제공되는 부대서비스의 제공을 내용으로 하지 않습니다.

구분 / 조문	현행	개정안
신설 제2조 제14호 (용어의 정의)	<신설>	14. “임대인”이라 함은 단기임대의 대상이 되는 임대물을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호스트 회원을 말합니다.
신설 제2조 제15호 (용어의 정의)	<신설>	15. “임차인”이라 함은 임대인이 등록한 임대물을 일정 기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게스트 회원을 말합니다.
신설 제2조 제16호 (용어의 정의)	<신설>	16. “임대물”이라 함은 임대인이 서비스에 단기임대의 대상으로 등록한 주택 등 부동산 및 그에 딸린 시설과 비품을 말합니다.
신설 제2조 제17호 (용어의 정의)	<신설>	17. “임대 신청”이라 함은 임차인이 임대물, 임대기간 및 이용 인원을 선택하여 임대인에게 단기임대를 신청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신설 제2조 제18호 (용어의 정의)	<신설>	18. “임대차계약”이라 함은 임대 신청이 임대인에 의하여 수락되고 임차인이 임대료를 결제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체결되는 단기임대에 관한 계약을 말합니다.
신설 제2조 제19호 (용어의 정의)	<신설>	19. “임대료(임차료)”라 함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물의 사용·수익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며, 보증금 및 공과금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설 제2조 제20호 (용어의 정의)	<신설>	20. “입주”라 함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기간이 시작되어 임대물의 사용을 개시하는 것을, “퇴거”라 함은 임대기간이 종료되어 임대물을 비우고 반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정 제5조 제3항 (회원계약의 해지)	3. 상호 합의하에 회원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예약건에 대해서는 숙박 예약건은 이행하며, 게스트 사용 이후 정산된 시점에서 계약이 종료된다.	3. 상호 합의하에 회원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예약건에 대해서는 숙박 예약건은 이행하며 (단기임대의 경우 체결된 임대차계약건은 이행하며), 게스트 사용 이후 정산된 시점에서 계약이 종료된다.
신설 제7조 제4항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신설>	4. 회사는 제1항의 서비스 외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단기임대 중개 및 임대물에 관한 정보 제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분 / 조문	현행	개정안
개정 제8조 본문(둘째 단락) (서비스 내용 변경통지 등)	제공하기로 했던 숙소가 마감됐거나, 각종 여러 문제 등의 사유로 제공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 가능한 방법으로 이용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제공하기로 했던 숙소(단기임대의 경우 임대물)가 마감됐거나, 각종 여러 문제 등의 사유로 제공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 가능한 방법으로 이용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개정 제14조 본문 (예약거래 기록의 보관)	예약 거래 기록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일정기간 보존합니다.	예약 거래 기록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일정기간 보존합니다. 단기임대의 임대 신청 및 임대차계약 기록도 같습니다.
신설 제16조 제4항 (예약거래 시 구매결정 및 송금)	<신설>	4. 단기임대의 임대 신청 및 임대차계약의 체결은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8조에 따릅니다.
개정 제17조 제3항 (예약거래 시 취소 및 환불)	3. “예약거래”시 숙소예약의 특성상 취소와 환불은 숙박업소와 확인 후 처리하게 되며, 신용카드결제 시, 신용 카드사의 환불기준에 의거하여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예약거래”시 숙소예약의 특성상 취소와 환불은 숙박업소와 확인 후 처리하게 되며(단기임대의 경우 임대인과 확인 후 처리하게 되며), 신용카드결제 시, 신용 카드사의 환불기준에 의거하여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설 제17조 제7항 (예약거래 시 취소 및 환불)	<신설>	7. 단기임대의 취소 및 환불에 관하여는 제29조를 함께 적용합니다.
개정 제19조 제3항 (포인트 및 쿠폰 서비스)	3. “쿠폰”은 예약할 때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표시된 금액 또는 비율만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3. “쿠폰”은 예약할 때나(단기임대의 경우 임대 신청 및 임대료 결제 시)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표시된 금액 또는 비율만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 제20조 제6항 (회사의 의무)	6. 회사는 모든 회원에게 숙박 중개에 필요한 기타 제반사항들이 함축된 당사의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호스트와 게스트 사이에서 발생한 모든 분쟁에 대한 책임 권한을 가지지 않습니다.	6. 회사는 모든 회원에게 숙박 중개 및 단기임대 중개 에 필요한 기타 제반사항들이 함축된 당사의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호스트와 게스트 사이(단기임대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발생한 모든 분쟁에 대한 책임 권한을 가지지 않습니다.

구분 / 조문	현행	개정안
신설 제21조 제8항 제8호 (이용자 및 회원의 의무)	<신설>	8) 숙박업을 영위하는 호스트는 서비스에 숙소를 등록할 때 [별표 1]에서 정한 업종별 영업허가증(관광사업등록증, 영업신고증, 농어촌민박사업자신고필증 등)을 회사에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효력을 상실한 경우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회사는 등록을 거절하거나 판매를 제한·중지할 수 있습니다. 단기임대의 경우에는 제31조 제7호에 따릅니다.
신설 제21조 제8항 제9호 (이용자 및 회원의 의무)	<신설>	9) 호스트가 단기임대를 제공하는 경우 제31조에서 정한 임대인의 준수사항.
신설 제21조 제9항 (이용자 및 회원의 의무)	<신설>	9. 단기임대 이용 시 임차인은 제30조에서 정한 임차인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개정 제23조 제9항 (면책조항)	9. 회사는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의 숙박 시설 이용으로 발생하는 숙박시설로부터의 입실거부, 예약취소, 환불불가 등의 불이익에 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9. 회사는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의 숙박 시설(단기임대 임대물을 포함합니다) 이용으로 발생하는 숙박시설로부터의 입실거부(단기임대의 경우 입주 거절), 예약취소, 환불불가 등의 불이익에 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신설 제24조 제4항 (분쟁해결)	<신설>	4.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도 제1항 내지 제3항을 같이 적용합니다.
신설 제 7 장 단기임대에 관한 특칙	<신설>	제 7 장 단기임대에 관한 특칙

구분 / 조문	현행	개정안
신설 제 27조 (적용 범위 및 용어의 대응)	<신설>	1. 이 장은 회원이 서비스를 통하여 임대인이 등록한 임대물을 임차인이 일정 기간 임차하는 단기임대의 이용에 적용되며, 단기임대에 관하여 이 장과 다른 장의 규정이 충돌하는 경우 이 장이 우선합니다. 2. 단기임대에 관하여 이 약관의 "호스트"는 "임대인", "게스트"는 "임차인", "숙소" 및 "숙박시설"은 "임대물", "예약" 및 "예약거래"는 "임대 신청" 및 "임대차계약의 체결", "예약금" 및 "계약금"은 "임대료(임차료)", "입실" 및 "퇴실"은 "입주" 및 "퇴거"로 읽습니다. 3. 단기임대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것으로, 회사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단기임대 중개 및 이 약관에서 정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단기임대에서는 객실 청소, 비품·침구 보충 등 숙박업에서 제공되는 부대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으며, 임대물별 제공 범위는 임대물 정보에 표시된 바에 따릅니다. 이 경우 제7조 제1항 제2호의 '룸서비스'는 입주 안내, 문의 응대 등의 "컨시어지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구분 / 조문	현행	개정안
신설 제 28조 (임대 신청 및 임대차계약의 체결)	<신설>	1. 임차인은 임대 신청 시 정확한 날짜 및 이용 인원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2. 단기임대는 임대 신청 > 수락 > 임대료 결제 > 임대차계약 체결 > 계약 확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3. 임대 신청 수락 후 결제에 관한 내용은 문자 등으로 안내하며, 수락 후 24시간 이내에 결제하지 않은 임대 신청은 만료됩니다. 4.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확정은 임대료 결제 순으로 진행되며, 먼저 임대료 결제를 완료한 건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임대 신청이 수락 상태이더라도 다른 임차인이 먼저 임대료 결제를 완료하는 경우 해당 임대 신청은 자동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임차인은 임대 신청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1) 보증금 및 공과금은 임대물마다 상이하므로 임대물 정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거주지 상황에 따라 전입신고 여부가 상이하므로, 전입신고가 필요한 경우 임대인에게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3) 비품, 침구 등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구분 / 조문	현행	개정안
신설 제 29조 (임대료·보증금·공과금 및 취소·환불)	<신설>	1.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료(임차료)를 제 15조의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며, 보증금 및 공과금은 임대물 정보에 표시된 바에 따라 지급·정산합니다. 2. 임대차계약의 취소 및 환불은 제17조 및 회사가 정한 별도의 취소·환불 규정(단기임대차 계약 취소 규정을 포함합니다)에 따릅니다. 3. 자연과 인접한 임대물에는 벌레가 유입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의 특성상 집 내부 벌레 유입을 이유로 한 환불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4. 미성년자의 이성 혼숙 또는 법정대리인의 비동행 등 관계 법령 위반을 이유로 현장에서 입주가 거절된 경우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5. 임대료의 정산은 제18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호스트”는 “임대인”, “게스트 사용일”은 “임차인의 입주일”로 읽습니다. 6. 임대인은 임차인의 퇴거 확인 후 3~7일 이내에 공과금 사용내역을 정확히 정산하여 안내하고, 보증금에서 공과금을 차감한 잔여금액을 임차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초과금액이 발생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청구하여야 합니다. 7.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차인이 중도 퇴거하거나 임대차계약이 취소되어 환불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해당 건에 대하여 최초 수취하기로 한 임대인 수수료(호스트 서비스 이용료)와 임차인의 서비스 이용료(게스트 수수료)를 임대인의 정산금에서 제외하고 정산합니다. 정산금이 부족한 경우 다음 정산금에서 차감하거나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조문	현행	개정안
신설 제 30조 (임차인의 준수사항)	<신설>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임대물은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용도(주거) 및 인원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임의로 전대하거나 재임대할 수 없습니다. 2) 계약된 인원 외 추가 인원이 함께 머물러야 하는 경우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3) 임대물 및 비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로 개조·변경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용 기간 중 발생한 시설 및 비품의 파손에 대한 책임은 임차인 본인에게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 변상하여야 합니다. 퇴거 시에는 입주 당시 상태로 원상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하며, 입주 시 이미 훼손되어 있는 시설이 있는 경우 사진·동영상을 촬영하여 임대인에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4) 귀중품 분실에 대한 책임은 임차인 본인에게 있으므로 귀중품 보관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5) 이웃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 악취, 흡연 등의 행위를 삼가야 하며,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6) 반려동물의 동반은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7) 임대물을 도박, 성매매, 불법영업 등 법령에 반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8) 임대 기간이 종료되면 별도의 통지 없이 정해진 시각까지 퇴거하여야 하며,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9) 화재, 누수 등 임대물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임대인 및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0) 청소년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청소년)의 이성 혼숙은 금지되며, 부모(법정대리인)의 동행 없이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구분 / 조문	현행	개정안
신설 제 31조 (임대인의 준수사항)	<신설>	임대인은 제21조 제8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이 회사에 법적 책임을 묻거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제21조 제8항 본문을 준용합니다. 1) 임대물 등록 시 실제와 일치하는 정확한 정보(주소, 면적, 시설, 사진, 임대 조건 등)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2) 임대차계약이 확정된 이후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임의로 취소할 수 없으며, 계약된 조건과 기간 동안 임대물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3) 임대료, 일정, 시설 정보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회사에 반응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미 계약한 임차인에게는 변경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여야 합니다. 4) 임대물이 관계 법령상 별도의 신고, 등록 또는 인허가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법적 문제는 임대인 본인이 책임지고 회사를 즉시 면책시켜야 합니다. 5) 임차인의 개인정보 및 임대 신청·계약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6) 미성년 임차인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모(법정대리인)의 동행 없이는 입주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7) 임대물 등록 시 사업자등록증을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효력을 상실한 경우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회사는 등록을 거절하거나 판매를 제한·중지할 수 있습니다. 8)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숙박업과 유사한 영업행위를 하여서도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거나 이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해당 임대물의 판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9) 임차인의 퇴거 확인 후 3~7일 이내에 공과금 사용내역을 정산하여 안내하고, 보증금에서 공과금과 손해배상금을 제한 잔액을 임차인에게 직접

구분 / 조문	현행	개정안
신설 부칙 제 2조 (개정 조항의 시행일)	<신설>	제2조 제13호부터 제20호까지, 제7조 제4항, 제21조 제8항 제8호, 제7장(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및 [별표 1]을 비롯하여 이번 개정으로 추가·개정된 조항은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합니다.
신설 [별표 1] 영업허가증 안내 (숙박업 종류별 필요 문서)	<신설>	[별표 1] 영업허가증 안내 (숙박업 종류별 필요 문서) 숙박업 종류 : 필요 문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 관광사업등록증 농어촌민박업 : 농어촌민박사업자신고필증 한옥체험업 : 관광사업등록증 일반숙박업 : 영업신고증 생활숙박업 : 영업신고증 호스텔업 : 관광사업등록증 관광호텔업 : 관광사업등록증

별첨 2. 단기임대차계약 환불규정 신설 신규조문 대비표

※ 본 규정은 2026년 11월 11일 00시 이후 예약·결제가 완료된 단기임대차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시행일 이전 예약은 예약 당시의 환불 규정을 따릅니다.

※ 현행 환불규정은 별도로 없으므로 전 조문이 신설이며, 개정안 열의 붉은색 글씨는 신설되는 환불규정 원문 그대로입니다.

구분 / 조문	현행	개정안
신설 환불규정 1. 기본 안내	<신설>	① 미스터멘션은 임대인(호스트)과 임차인(게스트)의 단기임대차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입니다. 분쟁 발생 시 당사자 간 합의를 우선하며, 사실 확인과 해결에 필요한 안내 및 협의 절차를 지원합니다. ② 취소·환불 요청은 미스터멘션 앱의 취소·환불 신청 또는 1:1 채팅 등 서면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소 시점은 요청이 기록된 시각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위약금은 계약서상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보증금 등 임대료 외 금액은 위약금 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④ 계약 변경, 취소 및 중도퇴실은 미스터멘션을 통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 환불규정 2. 입주 전 취소 위약금	<신설>	결제 후 7일 이내 취소 시 임대료 전액을 환불합니다. 다만, 아래 ②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결제 후 7일이 지난 취소 요청에는 아래 위약금을 적용합니다. 취소 요청 시점 : 위약금 비율 결제 후 7일이 지난 경우 : 총 임대료의 10% 입주일까지 15일 이내 : 총 임대료의 20% 입주일까지 8~14일 남은 경우 : 총 임대료의 50% 입주일까지 7일 이내 또는 입주 당일 : 총 임대료의 70% ① 구간이 겹치는 경우 입주일에 더 가까운 구간의 위약금을 적용하며, 위약금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② 예약 당시 입주일까지 7일 이내인 계약은 결제 후 7일 이내에 취소하더라도 위약금 70%를 적용합니다. ③ 관계 법령에 따라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기준보다 해당 법령을 우선 적용합니다. ④ 환불 시 해당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료를 반환합니다.

구분 / 조문	현행	개정안
		⑤ 입주 당일 취소 의사를 전달한 경우와 연락 없이 입주하지 않은 경우는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입주 후 중도퇴실은 '3. 입주 후 중도퇴실', 연락 없는 미입주는 '4. 미입주 처리' 기준에 따릅니다.
신설 환불규정 3. 입주 후 중도퇴실	<신설>	① 중도퇴실을 원하는 경우, 퇴실 예정 시각 48시간 전까지 미스터멘션을 통해 호스트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② 이미 이용한 기간의 임대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잔여기간 임대료의 7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30%를 환불합니다. ③ 잔여기간 임대료는 계약서상 일별 임대료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일별 임대료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총 임대료를 전체 계약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④ 사전 통보 없이 퇴실한 경우에는 호스트가 게스트에게 계약 유지 또는 해지 의사를 확인하는 안내를 발송합니다. '4. 미입주 처리'의 응답 기한과 해지 절차를 적용하되, 환불 금액은 본 중도퇴실 기준에 따라 계산합니다. ※ 임대료 전액을 납부한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신설 환불규정 4. 미입주 처리	<신설>	① 입주 예정 시각부터 24시간이 지나도록 입주하지 않고 별도 연락도 없는 경우, 호스트는 게스트의 등록된 연락처로 입주 또는 취소 의사를 확인하는 안내를 발송합니다. ② 게스트가 안내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도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해지되며 기납부 임대료 전액이 위약금으로 처리되어 환불되지 않습니다. ③ 연락 없이 입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 안내 절차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하지 않습니다.
신설 환불규정 5. 호스트 귀책으로 계약이 취소되거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신설>	① 호스트의 시설 하자, 입주 지연, 계약 내용 불이행 등으로 계약이 취소되거나 숙소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수준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호스트 귀책 여부를 확인합니다. ② 시설 하자 등 조치가 가능한 문제는 호스트에게 알리고 개선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스트가 조치했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정상적인 이용이

구분 / 조문	현행	개정안
		불가능한 경우에는 호스트 귀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③ 호스트 귀책 여부는 계약 내용, 별도 시설 기준 및 제출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확인합니다. 당사자 간 의견이 달라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처리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진행 상황을 안내합니다. 환불 등 처리 사항은 확인된 사실과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안내합니다.